

##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

관세법 제241조 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, 「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.

2022. 8. 17.

관 세 청 장

할당관세품목	상세품명 및 규격	세번부호(HSK)	적용기간
양과	기타 (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)	0703.10-1090	2022.08.17. ~ 2022.12.31.
전분	감자로 만든 것 (식품용)	1108.13-0000	2022.08.17. ~ 2022.12.31.
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	배소전분 (식품용)	3505.10-3000	2022.08.17. ~ 2022.12.31.
	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이나 스웰링 전분 (식품용)	3505.10-4010	2022.08.17. ~ 2022.12.31.
	에테르화전분이나 에스테르화전분 (식품용)	3505.10-5010	2022.08.17. ~ 2022.12.31.
	기타 전분 (식품용)	3505.10-9010	2022.08.17. ~ 2022.12.31.

끝.